

【별표1】 인사규정 제12조(결격사유)

제12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6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
【별표 2】 운전원 직무지식평가 출제범위

구 분		출 제 범 위
운전원	교통법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도로교통법 일반개요 . 교통사고처리특례법 . 범칙행위별 범칙금 내역 .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항 등
	안전운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교통안전시설 개요 . 신호기, 교통안전표시, 노면표시 .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행 방법 . 차량 안전관리 등
	운송서비스 *응급처치법 포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 운전자 준수사항 . 차량고장시 승객에 대한 조치 등 . 대승객 서비스 자세, 교통사고시 응급처치방법 및 환자후송절차 등 운전자가 알아야 할 일반상식 등